

□ 공통

- * “사업비 편성 및 집행 시 준수사항”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“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”에 우선하여 적용되며, 그 이외의 사항은 “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”을 적용함
- * 수행기관에서는 총사업비의 30% 이상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여야 하며(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민간 매칭금액의 합계가 30% 이상), 민간 현금은 총사업비의 20% 이상, 민간 현물은 총사업비의 10% 이내에서 매칭하여야 함.
 - 단, (총괄)주관기관이 대기업일 경우 수행기관에서는 총사업비의 50% 이상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여야 하며, 민간 현금은 총사업비의 40% 이상, 민간 현물은 총사업비의 10% 이내에서 매칭하여야 함
- * 로봇 제조기업이 생산·판매하는 로봇 등을 현물로 제공하여 실증할 경우에 한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매칭 가능
- * 인건비와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음

□ 직접비

- *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업 종료 후 정부출연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.
- *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은 집행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

세목	구분	내용
연구 시설· 장비 및 재료비	사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, 실증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- 해당 과제의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만 집행 가능하나, <u>전담기관에서 사전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 사항을 둘 수 있음 (범용성 장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평가위원회에서 실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용성 장비는 산정 가능)</u> -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건축비, 부지 매입·조성비 등 기반구축 예산은 편성 불가 - 로봇 부품 제작을 위한 재료의 구입비, SW 비용 편성 가능 - 로봇 부품 실증 목적의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 경비, 테스트베드 구축 비용 편성 가능 - 로봇 부품 실증용 로봇 제작 및 로봇 구매 비용 편성 가능

세목	구분	내용
	계상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테스트용 로봇에 대한 현물 계상 및 산정 기준은 “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”을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물의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% 이내에서 산정하며,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- 해당 로봇은 총 수행기간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음
연구 활동비	사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로봇부품 실증을 위한 시험 시험·분석·검사, 기술정보수집,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,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,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, 디자인 정보조사·개발 및 컨설팅 비용(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,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· 품질컨설팅비 등 ○ 이행보증보험 발급 수수료, 회계정산 수수료 등 ○ 이외의 항목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여부 심의시 승인한 경우에 한해 협약시 편성 가능
	계상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외여비는 원칙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, 실증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여부 심의 후 승인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 ○ 실증과 관련 없는 사무용품비, 공공요금, 수수료, 국내외 교육훈련비, 문헌구입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논문게재료, 사업관리비 등의 편성은 불가하나, 실증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,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 ○ 외부 용역비는 계약 건수 및 금액 기준에 상관없이 산정할 수 없으나 실증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한해 산정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서 작성 시 용역 수행 계획서 작성 필수(사유, 과업 내용, 예산 등 포함) -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○ 연구활동비로 편성할 수 있는 비목에 대한 계상 및 산정 기준은 “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”을 적용
연구 과제 추진비	사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로봇부품 실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무용품, 회의비(부품 실증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위한 회의장 사용료 산정과 식대 편성이 가능하며, 전문가활용비는 연구활동비에서 편성) ○ 로봇부품 실증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시 식대(평일 점심식대는 제외)
	계상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상 및 산정 기준은 “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”을 적용